

의안번호	2215823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6.2.25.
추계번호	25D7427

시민참여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, 국가시민참여위원회 및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,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5억 7,700만원(연평균 3억 1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평균
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 (안 제12조)	177	-	-	-	-	177	26
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(안 제15조)	120	120	120	120	120	600	120
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5조)	160	160	160	160	160	800	160
합 계	457	280	280	280	280	1,577	315

주: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시민참여 종합체계의 구축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책참여, 시민숙의·공론화,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시민참여 종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, 시민참여에 활동하는 개인·법인·단체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8조(시민정책참여 촉진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정책참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·평가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
3	안 제9조(숙의공론화의 촉진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를 보장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숙의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숙의공론화 제도에 대한 조사·평가 및 개선, 숙의공론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의공론화의 주요 의제를 선정·운영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10조(민주시민교육 활성화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사·연구 등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1조(시민사회 활성화)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과 시민사회 조직의 공공적·사회적 활동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,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 활동 관련 현황·성과 등 조사 및 통계 구축, 활동 주체의 교육·훈련 등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야 함	의무규정
		-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(시민참여종합계획의 수립 등)	-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	-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5조(국가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)	-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9	안 제22조(사무국의 설치)	-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, 조직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의무규정
10	안 제25조(지역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)	-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		-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관할 지역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·군·구 시민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음 -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7조(시민참여 종합체계의 구축)	×	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2	안 제8조(시민정책참여 촉진)	×	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3	안 제9조(숙의공론화의 촉진)	×	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10조(민주시민 교육 활성화)	×	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5	안 제11조(시민사회 활성화)	×	현 시점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6	안 제12조(시민참여 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	—
7	안 제1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	—	미대상: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안 제12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,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의 예산과 인력 내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8	안 제15조(국가시민 참여위원회의 설치)	○	
9	안 제22조(사무국의 설치)	×	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조직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10	안 제25조(지역 시민 참여위원회의 설치)	○	다만, 제3항에 따른 시민참여지원센터의 경우,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참여 영역별로 자율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여부 및 설치되는 센터의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에서 제외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12조에 따른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시민참여종합계획”이라 함)은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평균 예산을 준용함

- 시민참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째인 2027년에 수립한다고 가정
- 안 제15조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운영비용은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~2022년 운영되었던 시민사회발전위원회¹⁾ 운영비용을 준용함
- 안 제25조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시·군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 시민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시·군·구에 설치되는 시민참여위원회 수는 예측하기 어려우므로, 각 시·도지사 소속의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추계 대상으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²⁾를 적용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(안 제12조)

- 안 제12조에 따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가 시민참여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 - 추계의 전제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(최근 5건) 예산 평균금액³⁾을 준용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1)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(2020.5. 제정, 2022.10. 폐지)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2020~2022년까지 운영한 바 있음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5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구분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	2.3	2.0	1.9	2.0	2.0	2.0	2.0

3)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(자료: prism.go.kr)

- 2021년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90백만원), 2022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327백만원), 2022년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98백만원), 2023년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137백만원), 2023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(65백만원)

- 연구용역 예산 평균금액을 2023년 발생금액으로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

[표 2] 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종합계획 수립(안 제12조)	177	-	-	-	-	1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(안 제15조)

- 정부는 「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~2022년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는데, 제정안의 국가시민참여위원회와 규모 측면에서 유사⁴⁾한 점을 고려하여, 제정안에 따른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·운영 비용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간 평균운영비용 1억 2,000만원으로 보았으며, 이 금액이 추계기간동안 연도별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-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연도별 운영비용

: 2020년 142백만원, 2021년 133백만원, 2022년 84백만원

- 추계 결과, 안 제15조에 따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2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억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(안 제15조)	120	120	120	120	120	6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) 위원회 규모 비교

구분	시민사회발전위원회(2020~2022)	국가시민참여위원회(제정안)
위원 수	35명 이내	40명 이내
민간위원	전체 위원 수의 5분의 3 이상	전체 위원의 과반수
위원장	민간위원 중 호선	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

다.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5조)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 시·군·구를 제외한 시·도에만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
 - 현재 서울특별시는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 따라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,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·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구성 규정⁵⁾을 참고하여, 전체 위원은 총 15명으로 하고, 이 중 민간위원은 10명으로 가정
 - 위원회는 분기별(연간 4회)로 개최한다고 가정하고, 회의참석수당은 1인당 25만원으로 추계기간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
- 각 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마다 연 1,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,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·도에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6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시·도 시민사회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설치 시·도(a, 개)	16	16	16	16	16	—
시·도당 소요비용(b, 백만원)	10	10	10	10	10	—
소요비용(a×b, 백만원)	160	160	160	160	160	8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」 제19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라. 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5,7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5억 7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시민참여종합계획 수립 (안 제12조)	177	-	-	-	-	177
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(안 제15조)	120	120	120	120	120	600
시·도 시민참여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5조)	160	160	160	160	160	800
합 계	457	280	280	280	280	1,57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